
2020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결정(이사비)

2020. 4. 28.

익산지방국토관리청

I

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

□ 감정평가기관 평가·산정

- 토지·물건 등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

*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, 어업권 등 권리,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

□ 사업시행자 직접산정

- 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통적용 단가의 산출이 가능한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금액을 직접산정

* 이사비 등 4종 보상액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

<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 방법 >

보상대상	산정 방법	비고
이사비	통계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임 및 차량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 ※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	금회산정
분묘보상액	전북 및 광주전남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출한 '20 분묘이전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※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	'20.3월 산정
주거이전비	통계청에서 매년 조사·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※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	'20.5월 산정예정
영농손실액	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·발표하는 농가경제 조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※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	

- 분묘보상액은 기산정('20.3월)하였으며, 주거이전비와 영농손실액은 통계자료 발표 시기에 맞춰 산정 예정('20.5월)

II 이사비

□ 근거 규정
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(동산의 이전비보상 등)

□ 보상 기준

-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4의 주택건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

〈이사비 기준(별표 4)〉

주택건평기준	이 사 비		
	노 임	차량운임	포 장 비
33㎡ 미만	3명분	1대분	(노임+차량운임) × 0.15
33㎡ 이상 49.5㎡ 미만	4명분	2대분	"
49.5㎡ 이상 66㎡ 미만	5명분	2.5대분	"
66㎡ 이상 99㎡ 미만	6명분	3대분	"
99㎡ 이상	8명분	4대분	"

* 노 임 : 통계청이 작성·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(138,290원)

* 차량운임 :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·공표한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(192,000원)

□ 지급액

(단위 : 원)

주택건평기준	이 사 비			
	노임	차량운임	포 장 비	합 계
33㎡ 미만	414,870	192,000	91,030	697,900
33㎡ 이상 ~49.5㎡ 미만	553,160	384,000	140,574	1,077,730
49.5㎡ 이상 ~66㎡ 미만	691,450	480,000	175,718	1,347,160
66㎡ 이상 ~99㎡ 미만	829,740	576,000	210,861	1,616,600
99㎡ 이상	1,106,320	768,000	281,148	2,155,460

□ 최근 3개년 산정 현황

(단위 : 원)

주택건평기준	이 사 비 (노임+차량운임+포장비)		
	2018년	2019년	2020년
33㎡ 미만	623,820	684,570	697,900
33㎡ 이상 ~49.5㎡ 미만	995,060	1,080,660	1,077,730
49.5㎡ 이상 ~66㎡ 미만	1,243,830	1,350,830	1,347,160
66㎡ 이상 ~99㎡ 미만	1,492,600	1,620,990	1,616,600
99㎡ 이상	1,990,130	2,161,320	2,155,460

- 전년도 대비 노임의 상승폭보다 차량운임의 하락폭이 커 이사비가 주택건평기준의 첫 구간(33㎡ 미만)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소폭 하락

* 노임 : 125,427원→138,290원, 차량운임 : 219,000원→192,000원

Ⅲ 적용 기준

- (적용대상)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·하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

- (적용시기) 2020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21년도 보상단가 결정시 까지

* 본 단가결정 이전 산정 시에 누락된 경우의 보상금 산정은 2020년 보상기준 적용